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8호 2009. 2. 18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152-14호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153호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 정선군조례 제2154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정선군조례 제2155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7
- 정선군조례 제2156호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10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13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12
- 정선군고시 제2009-15호 하천 점·사용 허가고시.....13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84호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
- 정선군공고 제2009-87호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0
- 정선군공고 제2009-88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 21
- 정선군공고 제2009-89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22
- 정선군공고 제2009-90호 정선군 새주소 사업에 따른 도로명(안) 주민의견 수렴 공고.....23
- 정선군공고 제2009-91호 「정선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정선군공고 제2009-92호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30
- 정선군공고 제2009-94호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세고지서..... 35
- 정선군공고 제2009-97호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공모.....3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2. 17.

정선군조례 제2152-14호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월 220만원”을 “월 156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코자 함.

주 요 내 용

- 월정수당을 월 220만원에서 월 156만원으로 개정(제3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2. 17.

정선군조례 제2153호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정선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재향군인회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비
4.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등
5. 자원봉사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비

6. 호국·보훈의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장은 「정선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제정되어 재향군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관련 조례제정을 통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예우(제4조)
 -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 지원대상사업(제5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 재향군인회의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비
 -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등
 - 자원봉사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
- 예산의 지원(제6조)
 -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2. 17.

정선군조례 제2154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폐업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 본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22조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 정 이 유

- 전국 지방세 제도개선포럼 등을 거쳐 마련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지방세법」,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 감면업무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 감면조례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2조 및 제3조)
-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 경감조항(50%) 신설 (제12조)
-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문 대상 상이로 조문을 분리·신설 (제13조 및 제13조의2)
-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 구체화 (제24조)
-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사실상 감면인 분리과세 규정이 있어 감면규정 중복으로 전부개정 (제30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2. 17.

정선군조례 제2155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총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로 한다.

② 연출단장 1인을 두되, 예술분야의 전문가 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단원은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단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통할하며,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출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연출활동을 지원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총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④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기획감사실장·관광문화과장·정선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급여지급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원의 구성) ① 단원은 상임단원·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되, 수석단원·명예단원·일반단원 으로 구성한다.

- ②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 ④ 수석단원은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를 말한다.
- ⑤ 명예단원은 예술단 단원으로 퇴직한 자나 예술단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정원 외로 본다.

제6조(모집 및 위촉) ① 단원의 모집은 일반 공개모집과 특별모집으로 하며, 일반 공개 모집은 상임단원에 한하고 특별모집은 비상임단원에 한 한다.

- ② 일반공개 모집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 ③ 특별모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
2. 국내외 권위 있는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
3. 정선아리랑에 특별한 소질이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해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단원의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나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때
6. 본인의 원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자

제8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그러지 아니한다.

- 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예산지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급여지급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단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이 공연을 한 때에는 수당(출연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람료 징수) ① 예술단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료관람권의 판매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 판매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2만원 범위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립코자 하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설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 요 내 용

- 예술단의 설립목적과 구성 및 단장 등의 직무규정(제1조~제3조)
- 운영위원회 및 단원의 구성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제5조)
- 단원의 모집과 위촉 및 해촉·복무에 관한사항 규정(제6조~제8조)
- 예산지원등과 급여지급·관람료징수·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제12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2. 17.

정선군조례 제2156호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위임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교,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 재산가액의 100분의 5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재산가액의 100분의 5
3. 전주, 전선, 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 재산가액의 100분의 5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또는 대수선	○ 재산가액의 100분의 5
5. 가설건축물(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재산가액의 100분의 6
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7. 기타의 점용	○ 위 각호의 유사항목 적용

개 정 이 유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적용범위(제2조)
- 정선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
- 점용료의 부과기준(제3조)
-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점용대상에 따라 재산가액의 5/100~10/100 부과(불임 점용료를 참조).
- 점용료의 징수(제3조)
- 점용허가시 연액으로 일괄징수를 원칙으로 함.
-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함(별도예외규정)

정선군고시 제2009-13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2. 06.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조 창 수	주 소	강릉시 왕산면 도마2리 66번지
하 천 명		공유수면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1116번지선(1102-1천)		
	허가량	A = 374 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9년 01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농경지 사용(전:374m ²)		

정선군고시 제2009-15호

하천 점·사용 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2. 11.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주)창대이엔씨		
	대 표 자	차영만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654 삼호빌딩 2층
하 천 명		한 강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251천외 2필지		
	허가량	A = 3,210 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9년 02월 09일 ~ 2009년 03월 31일 (실공사기간 1-2일)		
	목 적 및 사 유	지반조사(시추공)를 위한 하천점용		

정선군공고 제2009-84호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공직자 및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2. 9.

정 선 군 수

1. 법규명 :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가.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변화된 공직환경과 높아진 주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나. 행동강령의 구체화·현실화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을 높이고 부패예방기능을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공포(2008.12.31)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안 제2조)

-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공무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
- 정책·사업 등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직무관련자에 포함함으로써 정책결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 제고 기대

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안 제4조)

-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에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

다.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안 제5조)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배우자·자녀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함

라.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 간접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안 제15조)

-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강의대가를 받거나 당연직 또는 비상근 이사의 과도한 이사회 참석수당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됨.
- 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기존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도 신고대상에 추가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바.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 경조사통지가 허용되는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에만 경조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는 경조사 통지를 허용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560-2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중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중 “각목의 1”을 각각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아목을 삭제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제4조제1항중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요청”으로 하고,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으로 하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시의 취소·변경”을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단서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 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중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로하고, “외부강의등”을 “외부강의·회의등”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를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로 하고, 동항

단서중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통지하여서는”을 “알려서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7조제2항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1회 평균 시간 :	회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정선군공고 제2009-87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강성환 외 3인
- 주소또는거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3-1 논현휴먼시아 508동 1207(48통2반)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 취득세 · 등록세 납부고지서

위의 서류를 2009년 1월~2월에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고지가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09년 3월1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10.

정 선 군 수

취득세, 등록세 공시송달내역

발송지	개인 (법인)명	과세물건	세액	공고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3-1 논현휴먼시아 508동 1207호 (48통2반)	강성환	토지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5,876㎡ 등기분과소신고추징	679,570	고지서반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3-1 논현휴먼시아 508동 1207호 (48통2반)	강성환	토지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6,610㎡ 미등기전매	213,619,320	고지서반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3-1 논현휴먼시아 508동 1207호 (48통2반)	강성환	토지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5,876㎡ 등기분과소신고추징	1,107,260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101동 306호 (2통5반)	박종미	013057 2008년식 승용 QM5 신규 (촉)	598,530	수령인없음 고지서반송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4-24 (4통6반)	김성일	토지 동면 호촌리 98번지 2,559.0000㎡ 매매	684,650	수령인없음 고지서반송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35-9 (15통1반)	이인숙	토지 임계면 봉산리 산50번지 39,669.0000㎡ 매매	8,440,250	수령인없음 고지서반송

정선군공고 제2009-88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2. 11.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창대이엔씨		
	대표자	차영만	주소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654 삼호빌딩 2층
소 하 천 명		상평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광하교, 광석교부근)		
	면 적	A = 730m ² (일시적점용)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9년 02월 11일 ~ 2009년 03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지반조사(시추공)를 위한 소하천점용		

정선군공고 제2009-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02. 10.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9.02.11~ 2009.02.24(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김낙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77-56 송광아트빌 201동 (21통2반)	취득세(부동산) 외 1	3,072,620	부동산	폐문부재
이재희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51-28 (4통1반)	취득세(부동산)	1,537,540	부동산	수취인불명
정홍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28 현대아파트 103동 1104호 (10통5반)	취득세(부동산)	728,610	부동산	폐문부재
포밍업코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804호	취득세(부동산) 외 5건	6,202,910	부동산	수취인부재

정선군공고 제2009-90호

- 정선군 새주소 사업에 따른 -
도로명(안)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정선군 새주소 사업에 따른 도로명(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12.

정 선 군 수

1. 공고목적 : 정선군 새주소 사업에 따른 도로명(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2. 공고개요 : 도로 411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안)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민원봉사과
4. 공고기간 : 2009. 2. 12 ~ 2009. 2. 23(11일간)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고기간 내 정선군 민원봉사과에 서면제출
6. 도로명 결정 절차
 - ① 도로명(안) 부여 ⇒ ② 주민의견수렴 ⇒ ③ 새주소위원회 심의 ⇒ ④ 도로명 고시
- ※ 협의대상(2개 시·군 이상에 걸쳐있는 도로) 도로구간은 강원도 협의 후 고시
- ※ 도로명 고시 후 3년 이내에 도로명 변경 불가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민원봉사과(☎ 560-21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91호

「정선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02. 11.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강화(안 제6조)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제11조, 제34조, 별표2)
-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시비율 조정(안제18조)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안제31조)
-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의2)
- 과태료부과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5)
-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 기타 관련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건설관리담당 (우편번호 233-701)

－ F A X 제출 : 033-560-2596

－ 문의전화 : 033-560-2475

붙임 정선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군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제4항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을 “옥외광고업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

자명 등을 표시(이하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⑤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군수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군수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중 가. 일반광고물의 제8호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5중 제3호를 제4호로, 같은 별표에 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과 태 료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40만원 100만원 25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40만원 100만원 400만원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존 광고물의 실명제 표시에 관한 경과 조치)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의2】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3조의2 관련)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10cm이하 * 세로 6cm 이하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가 · 신고 번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

정선군공고 제2009-92호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02. 11.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에 관한사항(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4조)
- 위원회의 설치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건설관리담당 (우편번호 233-701)
- F A X 제출 : 033-560-2596
- 문의전화 : 033-560-2475

붙임 정선군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예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94호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세고지서(2009년 1월)

위의 서류를 2009년 1월 9 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09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9년도 면허세 공시송달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 공시송달

현주소	개인 (법인)명	과세물건	본세	공고사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2-2 정선 북실아파트 101동 301호 (4통1반)	고종원	청통개별중기	6000	수취인미거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22-6 신일아트빌 401호 (8통2반)	이윤경	영진	800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7-1	대금종합건설	일반건설업	18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8-12 (9통3반)	윤영아	초우다방	6000	이사감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31-7	대웅건설	철콘공사업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89-16	정암건설	전문건설(토공)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89-16	정암건설	전문건설(철콘)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71 (1통1반)	신승영	하브암<MK-3)	8000	이사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2-2 (1통4반)	안백현	방문판매업	800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427 (6통2반)	김옥희	가미	600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2-2 (1통4반)	안백현	동양메디칼	6000	수취인미거주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31-7	대웅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9-1 봉양주공1차아파트 103동 202호 (10통6반)	권옥순	신월리402번지선	6000	수취인미거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65 (11통5반)	서양자	승희식품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9-6	정선측량설계공사	정선측량설계공사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7-1	대금종합건설	조경공사업	18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71 (1통1반)	신승영	수렵면허갱신	12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2-4	정선민들레영농	정선민들레영농조합법인	1800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366-28	기광건설	애산리251번지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55 (3반)	유돈문	수렵	12000	이사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42-22 (13/1)	대보실업	무선국개설	8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 (7통3반)	권태봉	동양설비	6000	이사감
서울 중랑구 면목5동 907-12	신영에너지	신영에너지	6000	주소,거소,영업소 불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39-5 (1통9반)	김호태	강원전당사	18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6 (5통2반)	박영덕	총포(개인소지)	3000	이사감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96	신평	신평방역	1200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1-14	프라임시티	주택건설사업자등록	1200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27-1 (2통5반)	최은석	실내가판대7	6000	이사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8	진민알앤디	고한리198(7동375세대)	12000	기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6 (5통2반)	박영덕	수렵면허	12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30-4 (2통5반)	김숙희	하얏트크린	3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30-4 (2통5반)	손진수	고한리330-11번지 도로점용기간 2003.10.31부터 2013.10.30까지	8000	이사감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둔전리 118 (2반)	천주익	족발전문점	600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7-6 (8통6반)	박진석	삼거리야식	600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22 (7통7반)	고석주	플러스카센타세차장	3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지하수개발이용	8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지하수개발이용	8000	이사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7-64정안빌 당402호	한마음인터내 셔널	생활용수	800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5-6	건우건축사무소	건우건축사무소	600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366-28	기광건설	토공사업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366-28	기광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229-3영동 (아)4-405호	정선도시개발	임대사업자	8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84-70	스마일여행사	스마일여행사(국외)	18000	이사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7-77 (23통3반)	김진오	스카이게임랜드	8000	수취인미거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1동 204호 (1통11반)	손경순	강원91자1264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84-70	스마일여행사	스마일여행사(국내)	18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604호 (5통7반)	김재석	(합)창원환경	12000	수취인미거주 고지서 미송달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리 조동리 513-1	정선군이연구소	이상수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28-2	삼삼화물	88사2051/2052/2053/2054	6000	이사감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3-1	동암이엔지	실내건축공사업	6000	이사감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76-1	아름다운조경	조경식재공사업	6000	이사감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61-4	동현건설	정선신동고성리 140-8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84-14 (3통1반)	김금자	드림뱅크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180	영암광산	미석광산(호명123,113)	18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09-2 (4반)	김명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180	영암광산	(주)일동철광	18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180	영암광산	미석광산(호명114)	18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180	영암광산	미석광산	3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484-12	계명종합건설	토목공사업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484-12	계명종합건설	건축공사업	6000	이사감
강원 정선군 북면 여량리 270-3	세우건설	토목건축공사	18000	이사감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519-219 202호 (10통2반)	김용래	고양리504구거(165번지선)	12000	수취인미거주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90-2	늘푸른	(주)늘푸른	3000	이사감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90-2	늘푸른	(주)늘푸른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394 (1/4)	대영영농조합	대영영농조합법인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238-10 동산아파트 나동 202호 (1통6반)	유병두	51바1030호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65-33	일토건설	건설업등록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361-4	형제건설	철콘공사업	6000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361-4	형제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000	이사감

정선군공고 2009-97호

**보물찾기를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 르네상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공모**

군민의 자율 사업계획(안) 공모 및 심사, 채택에 의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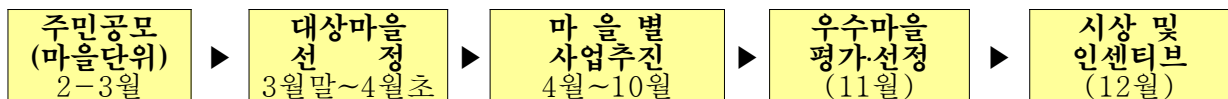
2009. 2. 13.

정 선 군 수

- 공모기간 : 2009. 2. 16 ~ 2009. 3. 17
- 응모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정선군민으로 마을가꾸기 운동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마을단위)
- 사업내용 :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된 특징적 요소로서 자연, 문화, 전통, 인공, 추상적 자원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마을 보물가꾸기 사업

※ 주요항목 : 개요, 대상지역, 추진내용, 추진체계 및 투자계획, 기대효과 등

- 작성방법 : 자율적으로 계획수립하되 주요항목은 필수 기재(A4기준 10매이내)
-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
 - 신청자 명단 (해당주민 10명 이상 연명부 작성 제출)
- 추진절차



- 심사기준
 - 주민 참여도 : 아이디어 발굴 등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
 - 창의성 및 차별성
 - 보물의 지역문화성, 고유성, 차별성, 고품격성 등 보물로서의 가치
 - 보물 및 마을가꾸기 계획의 독창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교모, 내용, 재원투자계획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및 타당성
 - 주민자체부담 정도 등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 사업 효과성
 - 보물 및 마을의 개선가능성, 주민편익증대, 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선정마을 지원 : 6개마을
 - 마을당 50,000천원 지원 및 도·중앙평가 입상시 인센티브 추가 지원
- ※ 문의 : 각 읍면 총무담당 및 자치행정과 행정담당(☎560-2232)

사업지원 신청 요약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4. 사업대상지역	○ 읍면 마을 (행정리 :)
5. 사업내용	○ ○ ○
6. 주요참여인원 및 구성원	○ 대표자 외 명
7. 예산계획	○ 총계 : 원 - 군비 : 천원, 자부담 : 천원, 기타 : 천원
8. 기대효과	○ ○ ○

위와 같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2009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사업별 신청자 명단
(사업명 : _____)

(읍면 명)

연번	사 업 명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1					대표자
2					
3					
.					
.					
.					

※ 대표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선정하고 정산 등의 업무처리

□ 마을가꾸기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시)

I. 개 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본방향 등

II. 대상 지역의 현황분석

- 자연환경적 여건 (대상 지역의 공간적 범위, 환경적 특성 등)
- 사회경제적 여건 (주민현황 및 특성, 현재의 소득여건 등)
- 지역의 주요자원 (특화 브랜드,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구비 등)
- 지역공동체의 특성 등

※ 마을 전경사진 포함(필수 첨부)

III. 주요 내용

- 대상 지역만들기의 비전 및 목표(마을의 보물찾기)
- 추진과제(재정·비재정 활동포함, 예술적 가치 부여계획 포함)
- 추진과제별 세부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지역만들기 기간 포함) 등

IV. 추진체계 및 투자계획

- 추진체계(민·관 협력체계, 지역만들기 전담조직 정비, 전문가적 지원체계 구비계획 등)
- 주민참여 실적 및 계획 (지역만들기 계획 아이디어의 원천,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적, 향후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계획 등)

※ 주민 참여과정의 기록물(일지, 회의록) 및 사진 포함

- 사업·재원별 투자계획
 - 주민, 군 재원, 민간자본 유치 등(자부담을 사업비의 5%이상 반영)
- ※ 재원별로 투자 확정여부를 명시

V. 기대효과

- 정성적 파급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 정량적 효과 (재원투자 대비 향후 성과, 주민 증가, 지역소득기반 확대 등)
- 타 지역으로의 파급 가능성